2017.1.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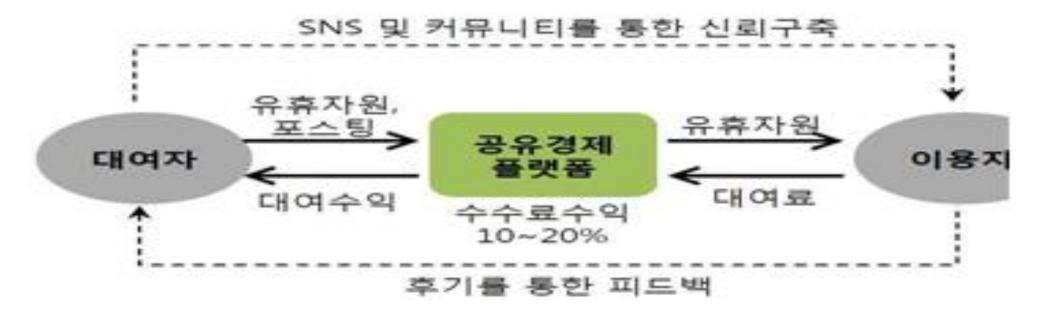
서강대 이성엽 교수/법학박사

# 목차

- I. 공유경제의 이해
- II.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-혁신과 규제
- III.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
- IV.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-3가지 규제대안
- V. 공유경제에서 규제혁신 방향

# I. 공유경제의 이해

o 공유경제(Sharing economy)의 개념



o 대여자의 유휴자원을 이용자에게 중개하고 이용자는 대여료를 대여자에 지급하는 구조이며, 중 간에서 플랫폼은 대여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한다.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의 신뢰와 이 용자의 후기를 통한 피드백이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함

# I. 공유경제의 이해

- o 공유경제의 가치
- 1) 이용되지 않은 채로 있는 자산(dead capital)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
- 2)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음으로써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시장 모두에 보다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게 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창출
- 3) 거래 의향이 있는 상대방을 찾고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이행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, 즉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주를 확대
- 4) 지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집적하여 신규 진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역선택(adverse selection)방지
- 5) 기존의 규제로 보호되어 비효율적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

# I. 공유경제의 이해

#### o O2O와 공유경제의 구별

- "O2O 거래(Online to Offline Commerce)"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서비스와 재화 등을 온라 인에서 구매하는 상거래를 말함
- 2010년 경부터 국내외 소셜 커머스(Social Commerce)'의 확산과 함께 생겨난 용어로, '서비스 물품의 검색 → 구매 의사 결정 → 대금 결제'는 온라인에서 하고, 그 '비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래 형태
-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
-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이용자간 중개플랫폼으로 의미, 유휴자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P2P 플랫폼이 공유경제의 전형. O2O의 경우 주로 B2P의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공유경제가 아니지만 광의의 공유경제에 포함될 수 있음

<sup>\*</sup> P2P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, 집이나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 등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중계서비스가 이에 해당. B2P는 기업이 소유한 제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,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렌탈서비스가 여기에 해당

- 1. 혁신(innovation)의 개념
  - o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 보다 효과적인 과정을 의미. 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의 적용
  - o 혁신은 새로운 절차, 제품,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상업적 내지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변환시키는 것
  - o 혁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시장 내지 사회에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구체 화하는 것. 새로운 기술과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개선(improvement)을 이루어 내는 것
  - o 발명(invention)과 달리 새로운 제품, 절차의 최초의 발견 이라기 보다는 이를 현실화 시키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음. 혁신은 경제적,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고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, 품질, 안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
  - o 단순한 변화(mere change)와도 구분.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혁신이 아니며 어떤 새로움 (newness or novelty)이 필요

- 2. 혁신과 규제의 관계
- o 혁신은 불확실성(uncertainty), 복잡성(complexity), 일시성과 유연성(temporariness and flexibility)이라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, 보수성, 일관성, 예측가능성을 속성으로 하는 규제와 본 질상 갈등적 임.

- o 첫째, 혁신을 거부하는 규제
  - 즉, 규제를 통해 혁신을 막는 경우.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제어하는 경우
-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 확립된 질서를 토대로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. 우버는 기존의 택시사업자,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자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임.
-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면허 없는 택시업과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. 흔히 진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

- o 둘째,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
-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행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.
- 저작권법, 특허법 등 지적 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 법제는 저작자나 발명자의 기술 혁신을 조장, 지원하는 규제
- 정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(regulatory reform)을 진행

- o 셋째,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경우
- 기존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최소 규제를 통하여 혁신의 활성화를 꾀하면서
  도 최소한의 규제 형평 및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

- o 넷째, Negative 규제(원칙적 허용-예외적 금지)방식의 적용
- 규제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(Positive Regulation)하는 경우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때마다 관계법령 제. 개정이 필요.
- 이 방식에 따르게 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법령에
  모두 규정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
- ICT 규제에서는 급격한 기술혁신의 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
- 혁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성숙할 때까지는 당분간 비규제 영역으로 두는 경우도 같은 의미라고
  할 수 있음

# III.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

- 1. 공유경제 맥락에서 혁신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
  - o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인지 여부와 기술적, 사회적인 개선(improvement)이 존재하는지 여부
  - o 보다 나은 변화가 있는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, 서비스인지에 따라 결정
  - o 기술적 개선은 기술발전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적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의 사회에 대한 이익이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가지거나 사회에 부가된 가치가 기업이었는 이득보다 클 때 인정

- 2. 기술적 개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
- o 광대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, 스마트폰 제조 및 S/W 내지 Application 기술, Social Network Service 기술,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GPS 기술, Payment 기술 등은 신기술

### III.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

o 사람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,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 시간으로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임

#### 3. 경제적인 측면에 혁신성 여부 판단

- o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거래비용이 적어야 하는데,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P2P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익명의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이 가능
- o 또한 익명의 거래상대방이 믿을 만한 주체인지 여부를 탐지하는데 있어 SNS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누적된 이용후기 정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에 대한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음.
- o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.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유휴자산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효율성을 가져오고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를 제거

# III.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

- 4. 사회적 개선인지 여부
- o 공유경제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불법일 가능성, 공급자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, 정부의 과세권 약화, 공중의 안전 문제, 위험발생시 법적 책임의 문제,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 축소 등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이 거론
- 5. 공유경제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
- o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. 공급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휴 자원을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고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의 기회를 증가
- o 반면 공유경제 기업 특히 이익추구형 플랫폼은 거대 ICT 플랫폼으로서 전통적 자본주의 기업과 속성에 있어 변함이 없음. 기존의 전통기업과 같은 시장을 두고 갈등은 물론이고 소비자 안전, 노동력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문제를 야기
- o 결론적으로 공유경제는 기술적, 경제적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, 사회적인 개선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

# IV.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-3가지 규제대안

- 1. 전면적 규제(Regulate it out of existence)
  - o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전통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
  - o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공유기업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
  - o 만약 기존 규제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과 소규모기업은 법을 준수함에 반해 거대 기업은 법을 회피하는 특권을 누리는 소위 2차원 정의 시스템(two-tier system of justice)을 허용하는 문제발생

- 2. 비규제 주장(No Regulation at all)
- o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전통적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

# IV.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-3가지 규제대안

- o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인 정보 불균형(information asymmetry)과 외부성(externalities)의 문제가 공유경제에서는 자율적으로 치유.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판매자의 신원 확인, 정부발행 ID 확인, 범죄경력 조회, 구매자의 사용 후 평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두 가지 문제는 전통적 경제에 비해 쉽게 해결되며,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 해결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장실패의 치유에 적극적이라는 입장
- o 특히, 이들은 이용후기제도(Reputational Feedback Mechanism)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 인터넷 경제에서 이 시스템은 두 번째의 보이지 않는 손(second invisible hand) 으로 작용.
- o 이에 더하여 전통적 비즈니스와 달리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직업적(professional) 존재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도 규제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(self-regulatory organization)를 통한 자율규제(self-regulation)가 적절하다고 주장

# IV.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-3가지 규제대안

- 3) 점진적인 상황전개에 따른 규제(Wait and See) 전략
- o 공유경제와 같이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는 ICT 생태계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- o 결론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규제모델과는 달리 초기단계의 혁신을 수용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Wait and See 전략을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
- 공유경제와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전통적인 Command and Control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기 어려움
- o 다만, 비록 혁신과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고 노동자 문제, 소비자 보호 문제, 과세 문제, 공정경쟁의 문제 등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는 존재

- 1. 규제혁신/개혁의 의미
- o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"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" 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(2012년 규제개혁백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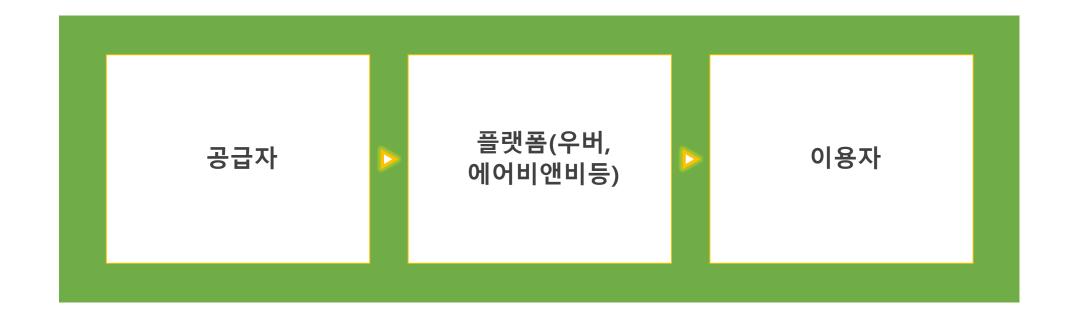
#### 2. 규제혁신의 목표

- o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: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
- o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: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

- o 국민의 삶의 질 향상: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, 환경,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.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
- o 부정부패 추방: 모호한 규제,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 차단

- 3. 공유경제에서 규제혁신 방향
- 1) 소비자의 선택권, 삶의 질의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
- o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규제혁신의 방향을 신구산업간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전환
- o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규제의 역할이 아니라 여하히 소비자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고민이 우선

- 2) 규제방식의 전환(진입규제에서 사후적 행태규제로)
- o 신기술,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함. 진입규제 방식의 정책대응은 평가의 기회를 정부가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
- o 특히 공유경제와 같은 ICT 기술의 경우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및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, 시 장참여자를 정부가 선별하는 방식의 규제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음.
- o 시장참가자와 경쟁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는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,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되 정부 개입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선별,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는 사후적 행태 규제방식으로 전환
- \* 최근 사후적 행태규제 도입의 사례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동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,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(별표) 5.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사-4)



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(다만,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)

- 3)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갈등의 조정
- o 이익집단들의 우려와 저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유발
- o 따라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접근,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보 추진
- o 공유경제의 경우
- 개인이 소규모로 공유경제를 하는 경우와 기업적으로 공유경제를 하는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Wait and See 전략, 수요 폭증시에만 제한적으로 공유경제 모델 도입
-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 검토
- \* 규제프리존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여 전략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당 지자체에 한하여 일 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서, 전국 단위의 전면적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규제완화조치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